

의안번호	2213962
의 퇴 인	신정훈 의원
회 답 일	2025. 11. 7.
추계번호	25F59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등이 특허권 등의 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근거 신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12조제4항 (기술이전·취득 및 사업 화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중소·중견기업 또는 국내복귀기업이 특허권 등을 이용하여 국 내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정 또는 결과에서 창출·파생되거나 신 성장 분야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또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5%(중소기업의 경우 30%)를 감면

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2조제4항 (기술이전·취득 및 사 업화 등에 대한 과세특 례)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 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이 특허권 등을 이용하여 국내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정 또는 결과에서 창출·파생되거나 신성장 분야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또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5%(중소기업의 경우 30%)를 감면할 경우 재정 수입의 감소가 예상됨
- 그런데 가용 정보가 미비하고, 과세대상이 불분명하여 개정안에 따른 세

수효과의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

-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를 위해서는 향후 중소·중견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이 특허권 등을 이용하여 국내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 또는 신성장 분야의 용역 공급·제공 과정에서 생산한 재화 및 용역의 범위와 매출액 등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
 - 이를 추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부재로 추계가 곤란
 - 또한, 중소·중견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재화 및 용역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구체적인 범위의 파악 곤란
- 따라서 중소·중견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하거나 대여받은 특허권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재화나 용역 공급에 따른 소득에 대해 세금을 감면하는 개정안에 대한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장설희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설희	02-6788-4836	shjang@assembly.go.kr